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106호

2015. 10. 26(월)

## 공 고

○ 남원시 조례 제2015-1260호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..... 1

회 람		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공고 제2015-1260호

「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6일

남 원 시 장

「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조례(안)  
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,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제척·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장애인복지위원장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와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의견 제출

-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주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 제출사항
 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  -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의견 제출할 곳 : 남원시장(참조 : 주민복지과장)
  - 우편번호 : 55738
  - 주 소 :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) 남원시청 주민복지과
-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11), 직접 방문,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(☎063-620-62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안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, 조사,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
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에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
2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2. 위원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
  3. 위원이 선량한 품의를 위반하였을 경우
-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은 본인 또는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**제9조(간사 및 서기)** ①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**제10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비밀준수 의무)**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3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

#### 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4항 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